

의안번호	2201350
의 퇴 인	복기왕의원
회 답 일	2024.8.28.
추계번호	24B1597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의2 신설 (실태조사)	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·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그밖에 실태조사의 범위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4조의2 신설(실태조사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·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○ 국토교통부는 “전세사기 피해 및 대응사례조사 연구”를 실시 중(0.8억원, 2024년, 연구기간 6개월)

－ 주요내용: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의 피해 사례와 사기 수법 등을 분석·유형화하여 예비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어, 그간의 피해자 결정 결과 분석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법 및 자가진단 매뉴얼 등을 포함한 ‘전세사기 피해 사례집(가칭)’ 발간 추진

○ 개정안은 전세사기의 유형과 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6개월 단위

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행 사업은 개정안의 일부인 피해유형 분석에 관한 사항은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 전세사기에 대한 전체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가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규모 조사를 위한 사업이 추가로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

- 다만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유사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1억원부터 180억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,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되어야 해당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피해조사 관련 유사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년도	수행기관	수요기관	사업비
노인범죄피해조사	2024	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	보건복지부	240
2020홍수피해상황조사	2020	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	환경부	100
포항지진 피해에 따른 피해산정조사	2020	에이원손해사정주식회사	국무조정실	18,000

자료: 조달청 나라장터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